

투자일임업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

으뜸자산운용 주식회사

투자일임업 수수료부과기준 및 절차

제정 2022. 09. 22.

제 1 조 (목적)

본 기준 및 절차는 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』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.) 제 58 조, 『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』 (이하 “금융소비자보호법”이라 한다.) 제 19 조제 1 항, 제 22 조 제 3 항에 의거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여 수수료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법 시행령, 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 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등(이하 “관련 법규”라고 한다)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3 조 (용어의 정의)

이 기준 및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“투자일임”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·처분,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.
- ② “기본수수료”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일임계약재산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서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운용성과와 상관없이 투자자로부터 받는 보수를 말한다.
- ③ “성과수수료”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종료일(중도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일)에 계약자산을 평가하여 계약체결시점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성과 수수료 부과기준을 충족한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를 말한다.
- ④ “기준지표 등”이라 함은 성과수수료를 수령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목표수익률로서,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지표 또는 회사와 고객간 합의에 의하여 정한 기준수익률을 말한다.

제 4 조 (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)

-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 각 일임계약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책정하되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.

- ②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,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, 투자자의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.
- ③ 수수료 수준은 계약의 특성,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, 인정가능한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 계약 기준으로 경영진이 결정한다.
- ④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고려해야 하며, 관련 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 합의하여 체결하는 투자일임계약서에 수수료 계산방법, 수수료 계산기간 및 수수료 지급시기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.
- ⑤ 투자일임계약 수수료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여 투자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수수료 계산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투자자와 합의하는 계약서에 따른다.

제 5 조(수수료 체계)

투자자는 회사와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수수료 지급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으며,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회사의 수수료 정책을 기본으로 투자자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 사전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기본형을 원칙으로 하고 기본수수료는 자일임계약 체결 시점의 투자일임자산액을 기준으로 2.0%(부가가치세 별도)로 한다.

1. 기본수수료만 지급 (이하 ‘기본형’이라 한다.)
2.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지급 (이하 ‘혼합형’이라 한다.)
3. 성과수수료만 지급 (이하 ‘성과형’이라 한다.)

제 6 조(성과수수료의 수령 기준)

회사는 법 제 98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과 연동된 성과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. 다만 회사는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

1.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인 경우
2.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 - 가) 성과수수료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준지표 등에 연동하여 산정될 것
 - 나) 운용성과가 기준지표 등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게되는 보수체계를 갖출 것
 - 다) 운용성과가 기준지표 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그 운용성과가 부(負)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
 - 라) 그 밖에 성과수수료의 산정방식,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

제 7 조 (일임계약의 증액 및 감액, 중도해지 등)

- ① 투자일임계약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증액금액에 계약잔여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.

- ② 계약이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또는 순자산총액에 운용경과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며 계약해지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기본수수료의 환급 및 해지수수료의 납입이 이루어져야 한다.
- ③ 계약의 중도해지시 해당계약과 관련한 대가를 미리 지급받은 때에는 미경과운용일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투자자에게 반환한다.
- ④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감액금액에 운용경과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며, 수수료를 미리 지급받은 때에는 감액금액에 계약잔여 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반환한다.
- ⑤ 계약의 감액 또는 중도해지시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 8 조 (설명의무)

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 조 1 항에 따라,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제 9 조 (공시 및 통보)

회사는 법 제 58 조 1 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, 법 제 58 조 3 항에 의거 이 기준을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10 조 (투자 광고)

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2 조 제 3 항에 의거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11 조 (기준의 제정 및 개정)

이 기준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제정 및 개정한다. 다만, 이사의 수가 2 인 이하로 이사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의 사전검토 및 협조 절차를 거쳐 대표이사가 개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기준은 투자일임업 등록일(2022.12.29)부터 시행한다.